

건설산업기본법 개정



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1일 공포했다.

개정된 건산법은 앞으로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제·해지하면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고 하도급공사에 추가·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금액,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.

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하되, 공사특성 등을 고려해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그동안 논란이 됐던 '완공일'의 개념도 '목적물의 관리·사용을 개시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'로 명확히 규정했다.

이밖에 건설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였으며,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.

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.[편집자주]

건설산업기본법(법률 제13469호, 일부개정)

- 공포일 : 2015. 8. 11.
- 시행일 : 2016. 2. 12.

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

○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지급 요청제한(제34조2, 제81조)

-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

현 행	개 정
<p>〈신 설〉</p>	<p>제34조의2(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) ① 수급인은 제34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발행한 기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. 다만, 하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1.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</p> <p>2.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·변경공사 등의 정산에 관한 합의의 지연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</p>
<p>제81조(시정명령 등)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제22조제7항, 제34조, 제36조제1항, 제37조, 제38조제1항,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</p> <p>5. ~ 9. (생략)</p>	<p>제81조(시정명령 등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제34조의2제2항, 제36조제1항, 제36조의2제1항 -----</p> <p>-----</p> <p>5. ~ 9. (현행과 같음)</p>

○ 원도급자 추가·변경공사 요구 시 서면 확인 의무화(제36조2, 제99조)

- 원도급자가 추가·변경공사를 요구 시, 금액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해야 함

현 행	개 정
<p>〈신 설〉</p>	<p>제36조의2(추가·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)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하도급계약의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(이하 “추가·변경공사”라 한다)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에게 추가·변경공사의 내용, 금액 및 기간 등 추가·변경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급인은 필요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서면 요구 및 발주자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<p>제99조(과태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~ 12. (생략)</p> <p>〈신 설〉</p>	<p>제99조(과태료) ----- -----; 1. ~ 12. (생략) 13.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·변경공사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건설업자</p>

○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개시일 명확화(제28조)

-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, 공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
- 하자담보책임 개시일을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·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정함

현 행	개 정
<p>제28조(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)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.</p> <p>1.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, 철근콘크리트구조, 철골구조,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: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</p>	<p>제28조(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) ① ----- ----- -----, 1. ----- ----- -----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·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-----</p>

현 행	개 정
<p>2.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: 건설공사 <u>완공일</u>로부터 5년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(「민법」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)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<단서 신설></p> <p>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수급인”은 “하수급인”으로, “발주자”는 “수급인”으로, “건설공사의 완공일”은 “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”로 본다.</p>	<p>2. -----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·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 -----, 다만, 공사 목적물의 성능,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 “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·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”은 “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·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”-----</p>

○ 건설업자 교육 제도 및 교육 이수 시 행정처분 감경제도 도입(제9조의3 신설, 제84조 및 제91조)

현 행	개 정
<p><신설></p>	<p>제9조의3(건설업의 교육)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(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(대표이사를 포함한다)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·기준·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
현 행	개 정
<p>제84조(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) 제82조,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, 영업정지의 기간, 과징금의 금액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후단 신설></p>	<p>제84조(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.</p>
<p>제9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·② (생략) 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1. 2. (생략) <신설> 3. ~ 9. (생략)</p>	<p>제9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1. 2. (현행과 같음) 2의2.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3. ~ 9. (현행과 같음)</p>

- 신규 건설업자 및 기존 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교육제도 신설 및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 등 처분 감경

○ 공제조합 운영위원 인원수 상한 확대(제55조의2)

- 공제조합 운영위원 구성 인원의 상한을 25인에서 30인으로 확대

현 행	개 정
<p>제55조의2(운영위원회) ① (생략) ② 운영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·④ (생략)</p>	<p>제55조의2(운영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30명 ----- 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